



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대책



글 / 김 기 육
협회 상근이사 ·

산업안전공단 전기분야 기준제정 전문위원

저 기관계법령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
계·공사·감리·유지 및 관리를 담당
해야 하는 전력기술인들이 각종 업역에서 전
기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바라는 마음에서
관련법령에 근거, 전력시설물의 방폭설비를 하
는 이유와 폭발재해와 그 대책에 대하여 서술
하오니 전력기술업무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1. 전력시설물의 방폭설비를 하는 근거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고시된 전기설비 기술기
준 고시 제218조 내지 제221조에 보면 재해가 발
생할 여지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과 같이 방폭설비
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의 저압시설(기술기준 제
218조)

(1) 마그네슘·알루미늄·티탄·지르코늄등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화약류 분발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400V미만 옥
내 전기설비

※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상기 물질을 분
리 또는 분쇄하는 장소 용기에서 다른 용기
로 옮기는 장소 또는 분진을 저장하는 장소

(2) 카본블랙, 석탄, 코우코스, 철 등과 같은
도전성 분진을 분리 또는 분쇄하는 장소

(3) 소맥분, 전분, 설탕, 합성수지와 같은 가연
성 분진을 분리하는 장소, 한 개의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기는 장소, 저장하는 장소

(4) 견, 마, 면, 대패밥, 모, 톱밥등과 같이 타
기쉬운 섬유를 분리하는 장소, 한 개의 용기
에서 다른 용기로 옮기는 장소 등

나.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기술기준 제219조)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증기의 위험
성으로 폭발하한선, 공기애 대한 비중, 휘발성
등이며 발생상태로 상태적, 보수작업시, 사고
시이며 환기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의
적용을 정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해당할 가
연성이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프로판가스 등 가연성 액화가스를 다른
용기로 옮기거나 또는 작은 용기에 분할해

